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59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임미애・김한규・장철민 전진숙・김 윤・손 솔 이연희・윤후덕・윤준병 송옥주・윤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기 위하여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원래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확인서 발급 심의・판정 업무를 중앙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한시적으로 대행하고 있음. 또한 법무부・노동부・경찰청 등 일선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적시성 있는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25.10.1.)으로 현행 정책조정협의회의 소속 및 구성 개편 등이 필요함.

이에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선 수사 및 감독 현장에서 피해자를 식별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계 체계를 강화하며,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며,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20인으로 확대함(안 제9조)

나. 중앙 및 지역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각각 중앙 및 지역사례판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중앙사례판정위원회는 관할 구역이 겹치거나 지역위원회가 없는 경우 사례판정을 하도록 함(안 제14조)

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인신매매 등 피해자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두도록 하고, 공공기관, 지방자

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 식별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확인 또는 알게 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조).

법률 제 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를 “20”으로,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장”을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차관
3. 보건복지부차관
4. 고용노동부차관
5. 해양수산부차관

제14조제2항 전단 중 “제15조에”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같은 조 제2

항”으로,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을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판정위원회”를 “제2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해자 해당 여부를 심의·판정한다.

1. 둘 이상의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2. 관할하는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8.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9.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을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를 “인신매매등 피해자 수, 인신매매등 피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묶어 권역별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를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무원의 안내 및 통보의무)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

공무원 및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 식별되거나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 또는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인적 사항·피해 사실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책협의회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정책협의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9조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①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② ---------- --- 20----------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 ----------.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법무부장관	1. 법무부차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차관
3. 보건복지부장관	3. 보건복지부차관
4. 고용노동부장관	4. 고용노동부차관
5. 해양수산부장관	5. 해양수산부차관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8.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생 략)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확인서 발급시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판정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 ----------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같은 조 제2항 ---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각각 ---------. <후단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피해자 해당 여부를 심의·판정한다. 1. 둘 이상의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관할 구역에 걸친 경우 2. 관할하는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 제2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또는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⑦ 제2항에 따른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와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신매매등의 예방·방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둔다.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7.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신 설>	8.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신 설>	9. 중앙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피해자를 신속히 식별·보호하고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둔다. <후단 신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를 ---------- 인신매매등 피해자 수, 인신매매등 피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묶어 권역별로 ---. 다만 필요한 경우 1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	4. 지역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또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둘 수 있다.
<신 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2(공무원의 안내 및 통보의무)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은 피해자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자로 식별되거나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 또는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그 인적 사항·피해 사실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야 한다.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립·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